

제3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 제3부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권고사례 일부를 수록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으로 묶어서 게재하였으며,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주요 시쟁권고사례

1. 형사사건 피의자 신원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172

언 론 사 : 디지털조선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4월 2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출신 레슬링 꿈나무의 눈물

1. 보도내용

「... 지난달 30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구 ○○동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행인을 각목으로 때려 실신시킨 뒤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모(○○)군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와 강력계에서 조사 내내 울먹였다. 최군은 ○○ 출신으로, 레슬링 선수가 되기 위해 귀화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까지 딴 유망주다. 한국인 아버지와 ○○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나, 3세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러시아로 돈을 벌러 떠난 뒤 소식이 끊겼다. 고아가 된 최군은 키워준 이모가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2006년 아버지의 나라로 왔다. (중략) 2009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나간 전국체전에서 소년부 레슬링 ○○형 ○○kg급 금메달을 따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3월에도 대한레슬링협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형 ○○kg 이하급에서 고등부 은메달을 땀고 지금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할 정도로 성장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미성년자 범죄 보도 시 사건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귀화 사실 및 출신국가, 전국체전 수상 경력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사건 보도 시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6조 제1항 및 소년법 제68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47

연 론 사 : 뉴시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5월 18일자 사회일반면

기 사 제 목 : 한나라당 이○○ 의원 부인 뺑소니 혐의 조사

1. 보도내용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한나라당 이○○ 의원의 부인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행인 B(39)씨의 오른쪽 팔 등을 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인 남편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435

언 론 사 : 한국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11월 16일자 10면

기 사 제 목 : 정동영 때렸던 그녀, 박원순에게도 손찌검

1. 보도내용

「정동영 때렸던 그녀, 박원순에게도 손찌검」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범리에 비취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 마약 용량 용법 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238

언론사 : e머니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5월 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흔적 없이 필로폰 투약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1. 보도내용

「...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에 ○○○을 넣고 가열해 ○○○를 흡입하는 일명 ‘○○○○○’라는 방법을 통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서 관계자는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은 흔적이 3~6개월까지 오래 남는데 비해 ○○○○○ 방법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다”며 “조직 내에서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검거에 대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 권고사항

마약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속칭 ‘○○○○○’라는 ○○○ 투약 방법을 상세히 적시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86

언론사 : 서울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4월 16일자 23면

기사제목 : ‘악마의 술잔’ 한모금에 블랙 아웃 24시간내 검사 못할 땐 미제사건

1. 보도내용

「... 최근 들어 나쁜 목적으로 자주 쓰이는 약물은 ‘○○○’ (○○ 히드록시 ○○○○), 로 ○○○○, ○○○ 등 3가지다. 대개 술이나 음료수 등에 쉽게 녹으며 색도 없고 냄새도 없는 알약 형태다. 이런 약물들은 원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좀 더 걱정적으로 즐기자는 목적에서 퍼지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가 악의적으로 변해 왔다. 가장 흔한 것은 ‘물 같은 히로뽕(필로폰)’이라는 뜻에서 ‘○○’으로 불리는 ○○○다. 액체류에 빠르고 감쪽같이 녹는 ○○은 약간 짠 맛이 나지만 술을 마시면서 이를 감지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은 수면장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엉뚱하게 전용된 경우다. 역시 무색무취에 알코올은 물론 콜라, 사이다, 주스 등에 잘 녹는다.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은 환각의 강도가 ○○○○나 ○○○보다도 강해 동남아 등지에서 ‘○○○K’란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다. (중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범죄자가 건넌 ‘악마의 술잔’을 들이켜면 30분이 채 안 돼 약효가 나타난다. 차츰 기분이 좋아지다가 그계 심해지면 주체 못할 졸음이 쏟아진다. 한 시간쯤 지나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의식을 잃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만취한 여자를 남자가 부축해 술집을 나가는 것 정도로만 비친다. 극소수는 ○○○을 당한 뒤 곧바로 깨어나 부분적이거나 기억을 되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술이 과해 필름이 끊어지는 ‘일시적 기억상실’(Black Out)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신체에 이상을 느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 스스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

2. 권고사항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방법,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371

연 론 사 : 아시아투데이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16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다양해지는 마약... 종류만 수십개

1. 보도내용

「... ○○○은 양귀비 추출물로 처음에는 몽롱한 상태의 효과를 얻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처음과 같은 약효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흡입이 필요해져 결국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 (중략) ... ○○○은 수면촉진, 기침완화, 통증억제 등 효과가 있지만 남용 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시킨다. 최근 ○○○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복방감초편이 우리나라에서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 냄새가 없고 백색, 연갈색, 암갈색의 분말형태로 나타나며 긴장, 분노, 공포를 억제해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이다. ○○○을 원료로 한 만큼 약리작용은 ○○○과 유사하나 중독성은 ○○○의 10배에 달한다. (중략) ○○○은 약효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로 벌레들이 피부를 기어 다니는 느낌의 환각을 일으킨다. 과다한 양을 흡입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열과 함께 경련이 일어나고 과용 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다. ○○은 코카인에서 추출한 백색 결정체로 코카인보다 몇 배나 약효가 강하고 중독성이 높다. 합성마약은 ○○○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이다. ○○○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계, ○○○계, ○○○○계, ○○○○계, ○○○○○계 등 5종으로 분류되며 이 중 ○○○○와 ○○○계가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 (중략)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 ‘히로뽕, 필로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다가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돼 전쟁 중 군인과 노동자들의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 생산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약용됐다. ○○○○는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시중유통이 금지됐지만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다. ○○○○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 ‘○○○○’ 등으로 통칭된다. 복용 후 20~60분이 지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며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해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는 합성된 무미, 무취, 무색의 환각제로 종이 또는 정제에 ○○○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 ‘쿤

사'가 개발한 'OO는 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청소년과 회사를 중심으로 퍼졌지만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도 남용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환각효과가 세고 중독성이 강하며 기존 히로뽕과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 색을 띠고 있고 정제나 캡슐형태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 주사기로 투약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가격이 저렴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지적되는 마약이다. OOO는 FDA가 공식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에는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알코올에 타마시면 의식을 잃고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돼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면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린다. 24시간 내로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중략) OOO은 응급환자용 강력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각성으로 인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사이에서 OOO 대용 약물로 남용됐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다.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두통, 환각 공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애, 빈뇨 등의 부작용이 있다. 과다 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을 일으킨다. 'OOO'로 불리는 OOOOOOOOOO은 가격이 저렴하고 여성들 사이에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 등이 남용하고 있다. OOOOOOOO은 근육이완제로 'O정'으로 불리며 러미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고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남용되고 있다. 마취제인 OOO은 오용할 경우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으로 유통시 남용가능성이 높은 마약이다.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통하며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맥박과 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OO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 흡연용으로 OOO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다. OOO는 OO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해 담배형태로 만든 것으로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OOOO로 부른다. 씨앗 생성기에 풍부하게 생성되는 OOO라는 물질 때문에 도취, 환각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환각제로 분류되며 남용시 집중력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OO 남용시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보다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OO로부터 추출한 OOO는 약 10%의 OOO를 함유하고 있어서 OOO보다 8~10배 강하다. OOO 오일은 OO로 증류공정 등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고도로 농축 추출되기 때문에 OOO 함량이 약 20%에 이르는 물질이다. OO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과 내분비기능 장애, 면역능력 감소, 정신분열증을 초래한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 및 약물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진을 게재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3. 자살자 신원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266

언론사 : 뉴시스

- 보도일시 및 위치 및 기사제목 :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슬픔에 잠긴 故 ○○○어머니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故 ○○○, 자택서 숨진채 발견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내 아들이 죽었다니 ...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믿어지지 않는 현실
 - 2011년 5월 27일자 포토면 : 오열하는 故 ○○○ 어머니
 - 2011년 5월 29일자 포토면 : 오열하는 故 ○○○ 유가족
 - 2011년 5월 29일자 포토면 : 오 열

1. 보도내용

「슬픔에 잠긴 故 ○○○ 어머니」, 「故 ○○○, 자택서 숨진채 발견」, 「내 아들이 죽었다니...」, 「믿어지지 않는 현실」, 「오열하는 故 ○○○ 어머니」, 「오열하는 故 ○○○ 유가족」,

「오열」 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의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 어머니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자살자의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의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회준 제1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376

언 론 사 : 조인스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9월 28일자 중앙USA면

기 사 제 목 : 한인 일식당 주인, 중업원 살해후 자살

1. 보도내용

「한인 일식당 주인이 여자 종업원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프로스펙트 하이츠의 ○○○○ 콘도 4층에 살고 있던 한인 여성 ○유(○○ Yu · 4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남성 오○○(○○ Oh · 46) 씨도 유 씨와 함께 현장에서 사망한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중략) 프로스펙트 하이츠 경찰서의 에릭 톨트 서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오 씨가 유 씨를 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총으로 자살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은 유 씨 소유로 두 사람이 다툼 끝에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감식은 이미 마쳤으며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략) 경찰 발표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의 일식당 사장과 종업원 관계였다. 10여 년 전 부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이민 온 오 씨는 ○○○○○ 사업을 하다가 4년여 전 현재의 일식당을 인수했다. 한때는 일식조리사를 4명이나 고용할 정도로 번창하다가 최근 가까운 곳에 동종업소가 들어서면서 예전 같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경력사항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4. 사생활 침해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314

연 론 사 : 시사서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28일자 A11면

기 사 제 목 : 우면산 무너지던 날 ○○○○ ‘복상사(?)’ 스캔들

1. 보도내용

「국내 증권사들에게 ‘슈퍼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는 ○○○○에 추잡한 스캔들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부에 소속된 42세 모 팀장이 단란주점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은 모텔에서 돌연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중략) ○○○○ 직원들이 모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의하면 이날 ○○○○본부 직원 3명은 증권사 직원 한명과 함께 접대여성이 있는 단란주점에서 음주가무를 즐겼고, 이후 증권사 직원을 제외한 ○○○○ 직원 3명은 접대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중략) 돌연사한 42세 A○○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송파구 방이동의 한 음식점에서 상사인 B(47)씨와 동료 C(41)씨, 모 증권사 직원 D씨와 저녁 식사를 했다. (중략)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탄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 직원이 증권사 직원에게 성접대를 받다가 ‘복상사’를 당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망한 A씨와 동행했던 여성이 “(A씨가) ‘몸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고 해 30분정도 대화를 나누고 나왔다”고 진술했고, 발견 당시 A씨는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으로 봐서 A씨가 ‘복상사’를 당했다는 것은 억측으로 보인다.…」

2.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망 경위가 불명확한 사망자의 직장, 소속 부서, 직책, 나이를 공개하면서, 미확인된 성매매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헌법 제17조 및 제2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및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46

언 론 사 : 전북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6월 1일자 6면

기 사 제 목 : “상대편 주장만 들어주는 판결 너무 억울하다”

1. 보도내용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흥기를 휘두르다 제지당하자 법원 옥상에 올라가 투신하려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7호 법정에서 권○○ 부장판사의 민사고법 항소심 선고를 듣던 윤모씨(○○·여)가 판결 직후 커터칼 조각을 꺼내 휘두르는 난동을 부렸다. (중략) ○시 ○면 한국불교태고종 ○○사 ○○인 윤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태인~원평간 자신의 사찰 인근의 터널 발포공도로건설공사 도중 이뤄진 발파작업으로 사찰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반이 들어졌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10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 권고사항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는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과 나이, 소속 종단 및 사찰명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향후 유사보도를 할 때 개인의 인적사항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기사는 헌법 제 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5.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321

언 론 사 : 동아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11일자 A14면

기 사 제 목 : 13명이 9시간 밤샘폭행 '막장 10대'

1. 보도내용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9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폭행한 무서운 10대 남녀 청소년이 대거 검거됐다. 이들은 폭행은 물론이고 피해 남학생의 ○○를 땅에 파묻는 등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 (중략) 김 군 등은 ○○○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 지역으로 윤 군을 끌고 가 이 지역 빈 건물 지하, 빌라 주차장, 아파트 인근 공원 등을 돌며 집단으로 윤 군을 구타했다. 또 윤 군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로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인근 지역을 돌며 윤 군을 폭행한 것은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폭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할 때는 남들이 윤 군의 폭행당한 ○○을 보지 못하도록 ○○○으로 가리기도 했다. 또 이들은 13명이 윤 군을 공평하게 때린다는 이유로 스톱워치로 3분씩 시간을 재면서 폭행했으며, 윤 군이 정신을 잃으면 깨어나도록 물을 끼얹었다. 마지막 폭행 장소인 놀이터에서는 윤 군의 머리를 비닐로 싸매고 약 40cm의 모래 구덩이에 ○를 파묻기도 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보도하거나 범행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10대 청소년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폭행 과정과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여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323

연 론 사 : 인터넷 경향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8월 22일자 사건/사고면

기 사 제 목 : “○○만 있으면 문 뚫다”...○○ ‘달인’ 절도범 검거

1. 보도내용

「○○○ 등에 사용하는 ○○으로 출입문을 따고 절도 행각을 벌인 일명 ‘두 주먹의 붉은 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을 사용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씨(3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훔친 물건을 매입한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유모씨(39)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5시쯤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근처의 커피숍에 침입했다.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슬쩍 앞으로 밀어 틈을 만들었다. 이어 틈새 안으로 길에서 주운 ○○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에 걸었다. 김씨는 곧바로 ○○을 힘차게 비틀어 당겼다. 그러자 ‘치익’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풀렸다. 문을 여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초. 그는 계산대 위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을 이용한 절도 방법을 기사와 사진으로 상세히 묘사하여 이를 알지 못하던 독자들로 하여금 범죄 모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안건번호 : 2011안건265

연 론 사 : 서울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6월 15일자 23면

기 사 제 목 : 「왜 조폭은 ○○의 ○○○를 찔렀나」 제하의 기사 및 그림

1. 보도내용

「... 하지만 이상한 점은 조직폭력배의 ○○○이 있을 때 유독 ○○○를 노려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는 피를 보면서도 최악의 결과로는 치닫지 않아 상대를 겁주기에 알맞다는 판단에서일까. 법의학자들은 그 반대라고 말한다. ○○○ 테러는 칼을 빼 다를 줄 아는 전문가들의 지능적인 살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중략)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했고 범인들이 노린 것은 ○○○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조직 폭력배가 낀 테러사건일수록 피해자의 자상이 ○○○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폭들이 ○○○ 부위를 공격하는 이유는 대퇴부의 동맥이나 정맥을 끊어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반면, 나중에 자신은 재판정에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할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살해를 하더라도 살의를 감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흥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 부위를 공격하면 살해의 의도를 감출 수 있다는 등의 범행 수법을 상세히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6.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사례

안건번호 : 2011안건227

언 론 사 : 일요서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1년 5월 22일자 18~19면

기 사 제 목 : “날 믿어야 대학간다” 파렴치 학원장

1. 보도내용

「정씨는 2007년 10월경부터 서울 ○○구 소재 모 ○○전문 학원을 운영했다. 학원장이었던 정씨는 건물 2, 3층을 강의실로 3, 4층 고시원을 학원 숙소로 이용,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했다. (중략) 정씨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정씨는 ○○살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김모(○○)양에게 지속적으로 “결단력이 없다. 성장해라”라고 말하는 등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9년 8월 김양을 은밀히 부른 정씨는 “신뢰도 테스트를 통과하면 나중에 취업까지 보장해 주겠다”며 성추행을 시도했다. 놀란 김양은 정씨를 뿌리쳤다. 하지만 정씨는 같은 날 학원 3층에 위치한 김양의 방으로 찾아가 ‘○○○’ 명목으로 김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김양은 학원을 다니는 동안 8~9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같은 시기, 정씨는 김모(○○)양에게도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정씨는 김양을 비롯한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로 견학을 가게 됐다. 정씨는 미국 숙소에서 평소 ○○○라고 부르던 김양을 은밀히 불러 “○○○가 된 이유를 대답해 보라. 대답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없다”고 위압감을 조성, 김양을 자신 옆에서 자게 하고,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가 된 이유다”며 김양을 성추행했다. (중략) 2009년 6월에도 박모(○○)양을 불러 “네가 에너지가 부족해 인격적 성장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남자친구가 없으니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겠다”며 추행했다. 또 한 달 후 학원 내에서 박양을 불러 “인격적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압박하며 성폭행했다. (중략) 지난해 4월 정씨는 ○○○테스트를 빌미로 윤모(○○)양을 학원 옥탑방으로 불렀다. 테스트를 받으러 온 윤양을 다짜고짜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 (중략) 지난해 6월에는 옥탑방에서 조모(○○)양에게 “성장을 하고 싶냐. 나를 믿느냐”고 물은 뒤 성추행 했다. 이후 조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 다른 학생들에게 “조양은 성장 할 수 없는 아이”라고 수시로 이야기 하며 조양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조양을 복종하게 만든 정씨는 “○○○”라고 물은 뒤 조양을 성폭행했다. 심지어 정씨는 같은 해 7월 중순경 학생 6명과 함께 ○○○○○○○○○으로 봉사활동을 가서도 조양을 유린했다. (중략) 또 정씨는 박모(○○)양에게 ○○ 동영상 보여주고 “성적으로 성장이 덜 됐으니 ○○ 동영상을 보고 차이점을 말해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 정씨는 놀란 박양이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하자 “테스트에 실패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폭행했다. …」

2. 권고사항

성폭력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성과 나이, 다니던 학원의 소재지와 운영 형태, 해외견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유사보도 시 피해자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